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영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
----------	------

발의연월일 : 2014. 4. .

발 의 자 : 김영분 · 이재병 의원

(찬성자 5인)

## 1. 제안이유

-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추가 및 보완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

## 2. 주요내용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추가 및 보완함 (안 제7조)
- 협의회 위원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 (안제11조의2)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 추진관련 지원규정 마련 (안 제15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적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규정 마련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별첨
-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 별첨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책무)”를“(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사업)

-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를 “(지역협의회 설치)”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초자치단체 담당과장,”을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u></li> <li>2. <u>“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u></li> <li>3. <u>“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li> </ol>
<p>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 ----- -----</p>

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시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과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경인지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2. (생략)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6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
2.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및 직업 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신 설>

제14조(생략)

<신 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 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생 략)

<신 설>

제18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 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

<신 설>

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p><b>관계법령</b></p>	<p><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p> <p><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b>관련법규 정비대상</b></p>	<p>“해당사항 없음”</p>
<p><b>특이사항</b></p>	<p>“해당사항 없음”</p>

# 관 계 법 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1.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미첨부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